|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실시 관련 사안에 관한 공고**  세관총서공고 2015년제63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한자유무역협정>이라 약칭함)을 2015년 12월 20일부터 정식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세관총서령제229호)에 의거, 관련 사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입물품에 관하여  1) 2015년 12월 20일부터 수입하는 한국산 물품(첨부1 참고)에 대해 협정세율을 실시한다. 본 공고 첨부1 중 간소화한 상품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그 범위와 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중 상응하는 세칙번호와 대응되는 상품범위는 일치한다.  2) 수입물품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수입인”이라 약칭함)은 수입한 한국산 물품 신고 및 협정세율향유 신청 시, 세관총서령제229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3) <중한자유무역협정>의 우대무역협정코드는 “19”이다. 수입인은 세관총서2008년제52호공고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입물품 통관신고서>(이하”수입 통관신고서”라 약칭함)를 작성한다.  (1) 수입 통관신고서 “동봉서류”란의 “동봉서류코드란”에 “Y”로 기입하고,”동봉서류일련번호란”에는 “<19: 증명이 필요한 상품항목번호>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통관신고서 중 제 1 항 ~ 제 3 항, 제 5 항 상품의 협정세율향유 신고 시에는 “동봉서류일련번호란”에 “<19-1-3,5>”를 기입해야 한다. 수입 통관신고서의 “동봉서류”란에 기입한 문자는 반드시 비중문입력 상태의 반각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수입 통관신고서상의 협정세율향유 상품의 수량은 원산지 증서상 대응되는 상품의 수량보다 많을 수 없고, 또한 수입 통관신고서상의 거래측량단위는 원산지 증서상 대응되는 상품의 측량단위와 일치해야 한다.  (3)원산지 증서에 작성된 모든 상품은 동일한 차수의 수입물품으로 봐야 한다.  2. 수출물품에 관하여  1) 수출물품 발송인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열총국에 소속된 각 지역 출입경 검사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 분회에 신청하여 수출물품 원산지 증서를 수령할 수 있다.  2) 수출물품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물품 통관신고서>(이하”수출 통관신고서”라 약칭함)를 작성할 시, 세관총서2008년제52호공고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 통관신고서상의 “동봉서류”란의 “동봉서류코드란”에 “Y”로 기입하고, “동봉서류일련번호란”에는 “<19> 원산지 증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3) 동일한 원산지 증서 항목 아래의 수출물품은 1부의 수출 세관신고서에 같이 신고한다.  3. 미착물품에 관하여  <중한자유무역협정>발효 전 이미 한국에서 수출하였고, 중국에 도착하지 못한 미착물품이나 이미 중국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인 물품은 수입인이 2016년 3월 20일 전 세관에 재발급 받은 원산지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한자유무역협정>협정세율향유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  　　1. 중국-한국 자유무역협정 2015년 협정세율표.part1.rar  2. 중국-한국 자유무역협정 2015년 협정세율표.part2.rar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564/info781724.htm>  세관총서  2015년12월18일 |  | **关于《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实施相关事宜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5年第63号  　　经国务院批准，《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以下简称《中韩自贸协定》）将自2015年12月20日起正式实施。依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229号)，现将有关事宜公告如下：    　一、关于进口货物  　　（一）自2015年12月20日起，对进口的韩国原产货物（见附件1）实施协定税率。本公告附件1中使用了简化的商品名称，其范围与2015年《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中相应税则号列对应的商品范围一致。  　　（二）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以下简称“进口人”）申报进口韩国原产货物并申请享受协定税率时，应按照海关总署令第229号的规定向海关提交有关单证。  　　（三）《中韩自贸协定》的优惠贸易协定代码为“19”。进口人应当根据海关总署2008年第52号公告的规定及以下要求填制《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货物报关单》（以下简称“进口报关单”）：  　　1．在进口报关单“随附单证” 栏目的“随附单证代码栏”填写“Y”，在 “随附单证编号栏”填写“<19:需证商品项号>”。例如：《中韩自贸协定》项下进口报关单中第1到第3项和第5项商品申报享受协定税率，则“随附单证编号栏”应填报为：“<19:1-3,5>”。进口报关单“随附单证”栏目所填写的字符，必须使用非中文状态下的半角字符。  　　2．进口报关单上的享受协定税率商品的数量不能大于原产地证书上对应商品的数量，且进口报关单上商品的成交计量单位应当与原产地证书上对应商品的计量单位一致。  　　3. 原产地证书所列的所有商品应当为同一批次的进口货物。  　　二、关于出口货物  　　（一）出口货物发货人可以向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所属的各地出入境检验检疫机构、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及其地方分会申请领取出口货物原产地证书。  　　（二）出口货物发货人或者其代理人在填制《中华人民共和国海关出口货物报关单》（以下简称“出口报关单”）时，应根据海关总署2008年第52号公告的规定，在出口报关单“随附单证”栏目的“随附单证代码栏”填写“Y”，在“随附单证编号栏”填写“<19 >原产地证书编号”。  　　（三）同一原产地证书项下的出口货物应当在同一份出口报关单申报。    　三、关于“在途货物”  　　《中韩自贸协定》生效之前已经从韩国出口、尚未抵达我国的在途货物，或者已经在我国海关保税仓库暂存的货物，进口人在2016年3月20日前向海关提交补发的原产地证书的，可以申请享受《中韩自贸协定》协定税率。  特此公告。  附件：  1.中国-韩国自贸协定2015年协定税率表.part1.rar  2.中国-韩国自贸协定2015年协定税率表.part2.rar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564/info781724.htm>  海关总署  　　2015年12月18日 |